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370
----------	-------

발의연월일 : 2025. 7. 9.

발 의 자 : 진성준 · 김현정 · 황명선
서미화 · 위성곤 · 박용갑
허영 · 박홍근 · 권향엽
주철현 · 정태호 · 정일영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전의 「조세특례제한법」은 산업재해 예방시설 등 안전시설에 투자한 비용에 대하여 별도의 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이러한 규정은 2020년 12월 삭제되었음.

그런데 최근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산업재해의 70% 이상이 안전관리 시설에 대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영세사업장이 안전시설 도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이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취득하는 안전시설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가속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사업장의 안전시설 도입에 따른 경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시설 확충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5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5(중소기업 안전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하 이 조에서 “안전시설”이라 한다)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안전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물품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시설

②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 안전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한 안전시설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8조의5(중소기업 안전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u> <u>「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u> <u>따른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u> <u>구분에 따른 시설(이하 이 조</u> <u>에서 “안전시설”이라 한다)을 2</u> <u>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u> <u>경우 해당 안전시설에 대한 감</u> <u>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u> <u>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u> <u>였는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u> <u>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u> <u>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u> <u>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u> <u>금에 산입할 수 있다.</u> <u>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u> <u>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u> <u>방시설(같은 법 제12조에 따</u> <u>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u> <u>여야 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u> <u>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u> <u>한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u> <u>로 정하는 소방 관련 물품</u>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
해 예방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안전관리 시설

②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신청
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방법과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